

게임기 처벌 기준?

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하거나 경품의 종류를 위반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.

◆ 게임기는 2대 또는 5대 이하로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▶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

가. 5대까지 설치 가능한 업소

- 1)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
- 2)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
- 3)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
- 4)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
- 5)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 · 대형마트
- 6) 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
- 7)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(신고면적 660m² 이상)

나. 2대까지 설치 가능한 업소

- 1)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

▶ 게임물의 설치 장소는 영업소 건물 내(영업소의 출입문 내부)

가. 복합 건물의 경우 복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

나. 일정 시설의 영업소인 경우 담장의 내부인 경우 설치 가능

◆ 경품은 완구류 및 문구류 등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물품이어야 합니다.

◆ 게임기는 당해 영업소의 영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

위반처벌 »



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수 이상 또는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

☞ 게임기 수거,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

경품의 종류를 위반(여성 속옷, 음란 성기구, 접이식 칼 등)하여 제공한 경우

☞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

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당해 영업장에 설치

☞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※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"청소년유해물건"에 해당되는 경우 「청소년보호법」에 의해서도 처벌 가능(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)